

1. 개정이유

대부분의 법령에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직무 관련 공무원’을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행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음.

신고포상금은 공무원의 단속 등만으로는 효율적인 규제집행이 어려운 영역에서 국민 참여를 통해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 관련 공무원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이 상당함.

이에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사유에 ‘공무원이 직무 또는 직무이었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직무 관련 공무원 제외(현행 제17조 개정)

- 1)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사유에 ‘공무원이 직무 또는 직무이었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를 추가함.

나. 신고포상금 운영성과 평가 및 환류체계 마련(현행 제9조 개정)

- 1)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가 포상금 지급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운영방식 개선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별첨)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기능 및 권한) ①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 지급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후 5년마다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운영방식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

제1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무원이 직무 또는 직무이었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제17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그밖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부적절한 경우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포상금 지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선거범죄로서 아직 포상금 지급 결정이 되지 아니한 선거범죄에 대하여도 이 규칙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 지급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제9조(기능 및 권한) ①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후 5년마다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운영방식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
제17조(지급의 제한)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이버 선거사범과 관련하여 단순히 인터넷에 게시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2. 상대방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 및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 당해 선거에서 피신고인과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신고한 경우 3. 신고인이 검찰 외에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에 이미 신고하여 포	제17조(지급의 제한)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공무원이 직무 또는 직무이었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6. (현행 제5호와 같음)

상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이미 신고가 되어 있는 사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

5. 그밖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
급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부적절한 경우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공공형사과	
연 락 처	(02) 2110 - 3282